

이 보도자료에서 공개되는 범죄사실은 재판을 통하여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공보담당관 자정경사 안성수
전화 02-706-1692
팩스 02-3270-4240

보 도 자 료

2017. 11. 15.(수)

자료문의: 식품의약조사부
전화번호: 02-706-1694
주책임자: 식품의약조사부장 이준엽

개당 8만 4천원파리 옥창방식이 건강보험공단에는 32만원에 급여 청구돼 장기요양급여 불법 유출 심각

- 서울서부지검, 노인용 복지용구 유통비리 수사 결과 발표, 7명 구속 · 32명 기소 -

●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식품·의약품안전중점검찰청」으로서 2017. 4.부터 11.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 관세청과 합동으로 옥창예방방식, 미끄럼방지매트, 지팡이, 목욕의자 등 장기요양 중인 고령의 노인들이 주로 사용하는 복지용구가 당초 원가보다 훨씬 비싸게 공단에 급여 청구됨에도 공단이 그 진위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이를 제조·수입·판매하는 전국 25개 업체를 대상으로 7개월여에 걸쳐 장기요양급여의 재정건전성 침해여부를 심도있고 철저하게 수사하였습니다.

- 그 결과, 제조·수입업체는 자신들이 공단에 제출하는 제조원가 자료 등을 기초로 옥창예방방식 등 복지용구의 고시가격이 결정되는 점을 악용하여, 재료비 등을 110%에서 400%까지 부풀린 허위 원가 자료를 공단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고시가격을 높게 책정하게 한 다음, 이를 기준으로 복지용구 제공에 따른 급여를 지급받는 방법으로 약 1,370억 원(환수 대상금액 433억 원)의 장기요양급여를 편취한 업체 대표 등 7명을 구속기소하고, 14명을 불구속 기소하였습니다.

- 또한, 복지용구가 필요 이상 과다 공급되어 복지 예산이 낭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를 제공받은 수급자로부터 지급 받도록 되어 있는 본인일부 부담금(고시가격의 15%)을 아예 받지 않거나, 알선 브로커에게 수급자 소개 대가를 지급하여 수급자 알선 행위를 조장한 복지용구 판매사업체 대표 등 11명을 적발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법위반으로 전원 불구속 기소하였습니다.

● 한편, 검찰은 지난 10. 30.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 확인된 복지용구의 고시가격 결정 및 유통과정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건보공단, 관세청과 함께 “클린 피드백 회의”를 개최하고 △공단의 고시가격 결정 심사권 강화 △공단과 관세청 간에 수입 복지용구 가격에 대한 정보공유 △ 위반행위 신고 및 이에 대한 포상 제도 도입 등 개선안을 마련하였고, 이를 보건복지부에 건의할 예정입니다.

- 한편, 앞으로도 줄줄이 새는 복지재정을 견고하게 지키기 위하여 복지재정의 건전성을 침해하는 사범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I 수사 경과

□ 수사 착수 배경

● 2016년 400억원의 장기요양급여 재정적자가 발생함을 확인하고 장기요양급여의 불법적인 수급이 빈번할 것으로 판단, 기존 수사사례 및 언론보도를 심층 분석

- 옥창예방방식 등 복지용구 수입업체가 수입원가를 부풀려 공단에 고시가격 결정 신청을 하였던 사례를 확인

※ 장기요양급여의 정의 및 복지용구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별첨1> 참조

		2014년	2015년	2016년
장기요양급여 수입액		4조 400억 원	4조 3,300억 원	4조 6,600억 원
장기요양 급여 지출액	복지용구 지출액	900억 원	999억 원	1,125억 원
	복지용구 외 지출액	3조 6,500억 원	4조 1,301억 원	4조 5,875억 원
수지		+3,000억 원	+ 1,000억 원	- 400억 원

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 이에 공단·관세청으로부터 복지용구 관련 판매 및 통관자료 등을 수집하여 분석한 결과

- 다수의 복지용구 판매사업소에서는 구매자로부터 받아야 하는 본인 일부부담금을 받지 않고 복지용구를 판매하고 있었으며

- 본인일부부담금을 받지 않고 판매되는 복지용구의 경우 그 가격이 부풀려져 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하고 관련 업체를 중심으로 계좌추적, 압수수색 등 본격적인 수사를 진행

□ 주요 수사 진행 경과

- '17. 4. 공단·관세청과 함께 ① 복지용구 수입업체 수입원가 분석, ② 복지용구 판매사업소의 본인일부부담금 면제 실태 및 현황 분석, ③ 수입 및 국내제조 200여개 복지용구의 제조·수입원가 및 사업소 공급단가 분석 등을 통해 고시가격이 현저하게 부당하다는 의심이 드는 업체 선별
- '17. 5. ~ 10. 서울, 부산, 대전, 대구, 인천, 경기 등 전국에 걸쳐 있는 복지용구 판매사업소 7곳, 복지용구 제조·수입업체 18곳에 대한 압수 수색 및 관련자 조사

▶ 복지용구 제조·수입업체 18곳에서 판매하고 있는 105개의 제품에 대하여 각각 ① 매입·매출장부 분석 ② 계좌내역 분석(부풀린 대금 돌려받기 유무 확인) ③ 유사 제품과의 가격비교 등을 통해 실제 투입된 원자재 가격, 외주가공비, 노무비 등을 확인

- '17. 8. ~ 11. 복지용구 제조·수입업체 대표 등 7명 구속 기소, 14명 불구속 기소, 복지용구 판매사업소 대표 등 11명 불구속 기소

II 주요 공소사실 요지

□ 주요 공소사실 요지

- 피고인 AOO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08. 08. ~ '17. 05. 복지용구의 재료를 실제 원가보다 부풀려 작성한 허위 영수증을 첨부하여 공단을 속여 고시가격을 높게 산정받은 다음, 이를 복지용구 사업소에 판매하고, 공단에서 복지용구 사업소에 장기요양급여 295억 원을 지급하게 하여 편취

● 피고인 VOO [노인장기요양보험법위반]

- '14. 04 ~ '17. 04. 수급자가 부담하는 복지용구의 본인일부부담금 2,200만 원을 면제하거나 감경
- '14. 02. ~ 17. 04.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소개 대가로 알선 브로커에게 9억 9,800만 원을 지급하여 수급자 알선 행위를 조장

※ 전체 피고인들의 범죄사실은 <별첨2> 참조

□ 주요 범행 수법

- 장기요양급여 편취 범행

<국내제조 업체 사례>

- ▶ 외주가공 업체에 단가가 부풀려진 세금계산서 또는 외주가공 계약서를 요구
- ▶ 세금계산서상 총액은 그대로 둔 채 공급받은 개수를 실제 보다 줄여 단가를 높임
- ▶ 공단 급여신청 후 부풀려진 세금계산서를 없애버리고 실제 가격의 세금계산서를 다시 발급

<해외수입 업체 사례>

- ▶ 부풀려진 금액대로 해외 거래처로 송금해 준 후 ① 해외에 가서 차액을 되돌려 받거나 ② 다른 수입제품 결제대금으로 사용

- 주요 업체의 원가 부풀리기 결과

- ▶ '다'업체) 욕창예방방석 : 실제 단가 '84,800원' v. 고시가격 '324,000원' (400%)
- ▶ '나'업체) 미끄럼방지매트 : 실제 단가 '28,300원' v. 고시가격 '65,000원' (230%)
- ▶ '파'업체) 지팡이 : 실제 단가 '22,300원' v. 고시가격 '45,500원' (200%)
- ▶ '타'업체) 목욕의자 : 실제 단가 '153,000원' v. 고시가격 '215,000원' (1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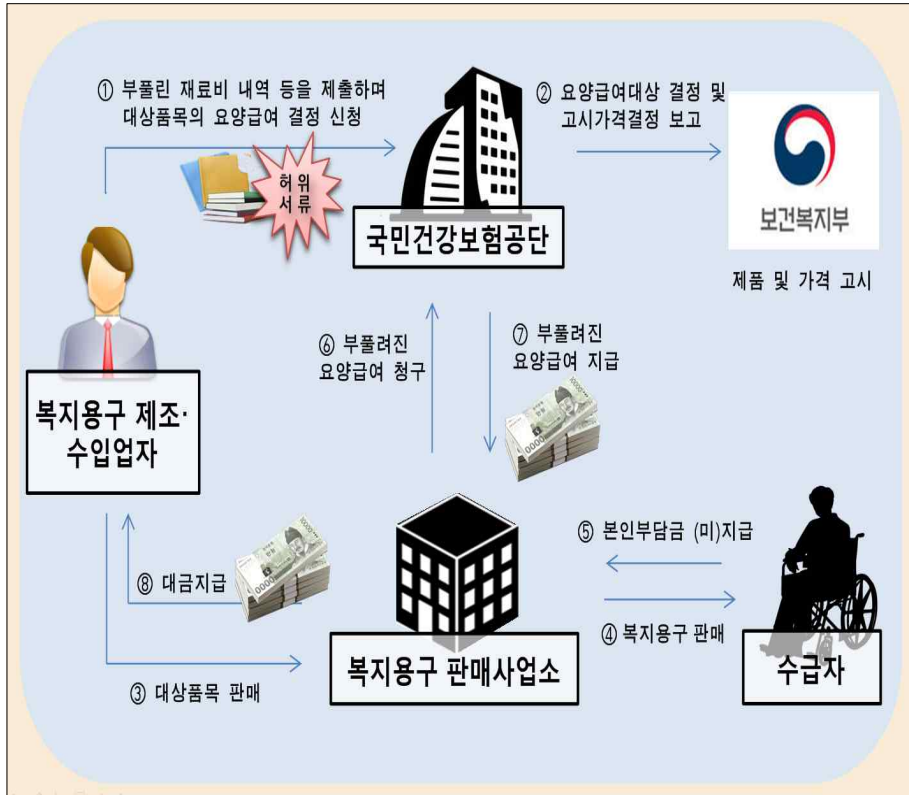
● 본인일부부담금 면제 등 범행

- ▶ 텔레마케터 등을 고용하여 ① 본인일부부담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고 안내 해주거나, ② 본인일부부담금을 일단 납부하면 추후 다시 돌려준다고 수급자를 모집
- ※ 브로커 甲은 약 3년 2개월 동안 수수료만으로 1억 5,000만 원 취득

III 범행 구조

□ 장기요양급여 편취 범행 (복지용구 제조·수입업체의 범행)

● 범행도식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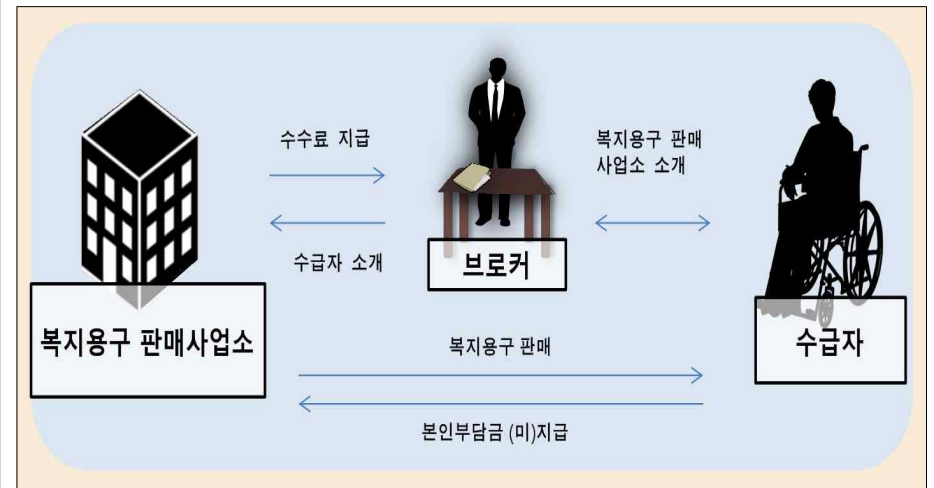
● 복지용구 고시가격 결정구조

- 복지용구 고시가격은 ① 해당 업체가 복지용구 원가자료를 토대로 산정하여 제출한 판매희망가격 ② 공단이 조사한 동일 또는 유사 제품의 시장조사가격 ③ 해당 업체가 공단에 제출한 원가자료를 토대로 공단이 산정한 공단산출가격 중 최저가격을 기준으로 결정함
- 복지용구 제조·수입업체가 부풀린 원가자료를 공단에 제출할 경우 판매희망가격과 공단산출가격이 모두 실제보다 고가로 산정되고, 고시가격 결정을 위한 최저가격 역시 실제와 달리 고가로 형성됨으로써 공단의 고시가격 결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됨

※ 따라서 제조업체는 원가자료를 실제와 같이 작성할 의무가 있고, 이를 위반할시 사기죄에 해당함 [대법원 2015다245275 판결(민사), 대법원 2014도 445 판결(형사) 등]

□ 본인일부부담금 면제 등 범행 (복지용구 판매사업소의 범행)

● 범행도식도



● 본인일부부담금 감면 및 수수료 지급금지 이유

- 본인일부부담금 제도는 실수요자만 복지용구를 구매하도록 하여 필요 이상의 물품 제공을 방지하고 장기요양급여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나 복지용구 판매사업소는 과당 경쟁 속에서 사업이익을 위하여 감면 및 수수료 지급 등 부당한 방법으로 사업을 유지하는 것임

IV 수사의 의의

□ 복지용구 제도의 구조적 문제점 확인

● 복지용구 제조·수입업체의 만연된 범죄행위 적발

- 수사결과 18개 복지용구 제조·수입업체의 105개 제품 원가 조작행위를 적발함

실제 단가 대비 부풀린 비율	해당 제품 수
150%미만	55개
150~200%미만	25개
200~300%미만	21개
300~400%미만	4개

□ 장기요양급여 재정 불법 유출로 인한 범죄수익 환수

- 수사결과 불법 유출되어 환수해야 할 장기요양급여의 규모가 433억 원에 이른 사실을 확인함

※ 법률상 편취금액은 장기요양급여 신청으로 인하여 받은 1,370억 원 전액이나, 공단에서 환수해야 할 금액은 허위 원가자료 제출로 인해 부풀려진 차액 433억 원임

-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65억 원은 공탁으로 회수하였고, 나머지 368억 원은 공단에서 피고인들을 상대로 민사소송 등을 통해 환수할 예정

※ 검찰은 수사결과 확인된 실제 제조원가를 공단에 통보하여 공단은 이를 통하여 고시가격을 인하하는 등 재조정할 예정임

● 복지용구 가격결정 과정의 문제점 확인

- 복지용구 고시가격은 업체에서 제출한 재료비 등 원가자료를 기초로 결정되나, 공단에서는 제출된 자료의 진위 여부 검증의 어려움이 있어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

● 복지용구 판매 과정에서의 문제점 확인

- 전국에 약 1,900개의 복지용구 판매사업소가 난립되어 있어 본인일부 부담금 면제 및 브로커에게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고서는 판매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렵고, 이러한 상황이 제조·수입 업체가 공단에 허위 원가 자료를 제출하는 원인 중 하나라는 사실을 확인

□ 유관기관인 공단, 관세청과의 유기적 공조 수사

- 공단의 복지용구 실태 조사, 관세청의 복지용구 수입·통관자료 분석 등 상호 긴밀한 협조 하에 유기적 공조 수사 진행

V 복지용구 제도의 문제점 개선 방안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제도적 문제점 개선방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공단과 의견을 주고받았으며, 2017. 10. 30. 공단 장기요양급여 복지용구부 및 관세청 조사총괄과 담당 간부와 합동 제도 개선회의를 개최하여 공동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하였고, 향후 보건복지부에 건의할 예정임

□ 가격결정 고정에서의 문제점 개선

● 제조·수입원가 확인 절차 강화

- 공단은 업체로부터 재료비 지급 계좌내역, 전자세금계산서 등을 추가로 제출받고, 국세청에 그 진위여부를 확인하는 등 실제 원가 확인 절차 강화
- 공단과 관세청의 정보공유 활성화를 통해 수입 복지용구의 경우 ① 단가 ② 수입대금 지급 내역 ③ 가격변화 추이 등 관련 정보를 정기적으로 분석·확인

● 표준원가관리 시스템 구축 (2020년 도입 예정)

- 공단은 시장조사 및 원가 자료분석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여 매년 재료비, 노무비, 외주가공비 등에 대한 표준원가를 제시

□ 가격결정 이후 사후 관리 강화

- 공단은 고시가격 결정 이후 업체의 저가 부품으로의 교체 등 품질저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 등 복지용구의 사후 품질검사 강화

□ 판매과정에서의 관리 강화

- 복지용구 판매사업소는 본인일부부담금을 납부받은 후 장기요양급여를 신청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사업소에 대해서는 지급된 장기요양급여를 회수할 수 있는 규정 마련

※ 현재는 장기요양급여 지급시 본인일부부담금의 실제 납부 유무는 심사 대상에서 제외 되어있음

- 본인일부부담금 면제행위는 사업소와 수급자간에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사후 적발이 어려워므로 제도의 정착을 위해 신고 포상금 제도 도입 검토 필요

※ 장기적으로 복지용구 판매사업소에서 본인일부부담금을 직접 납부받는 현재 방법 외에 공단에서 직접 실수요자에게 복지용구를 지급하는 등 근본적인 검토도 필요함

VI 향후 계획

-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식품·의약 중점검찰청으로서 앞으로도 유관 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 누수 사범들에 대한 지속적 단속을 통해 공단재정이 올바르게 쓰일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 

<별첨1>

* **장기요양급여** : 6개월 이상 혼자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지급되는 신체활동·가사활동의 지원 또는 간병 등의 서비스나 현금 등을 말함

* **복지용구** :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치매·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중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사람에 대해 일상생활·신체활동 지원 및 인지기능의 유지·향상에 필요한 용구로 공단이 심사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것

[구매가격의 15%는 본인 부담, 85%는 장기요양급여로 지원하고 있음]

<주요 복지용구>



<욕창예방방석>



<미끄럼방지매트>



<지팡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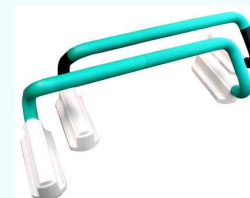
<자세변환용구>



<성인용보행기>



<목욕의자>



<안전손잡이>



<전동침대>



<미끄럼방지양말>

<별첨2>

피고인별 공소사실 요지

1. 복지용구 제조·수입업체 [기소일 : 2017. 8. 4. ~ 11. 9.]

순번	피고인	공소사실 요지(죄명)	처분 내역
1	1.A○○(68세) '가'업체 실운영자 2.B○○(62세) '가'업체 前대표이사 3.C○○(52세) '가'업체 前대표이사 4.D○○(42세) '가'업체 개발부장	'08. 08. ~ '17. 05. 복지용구인 목욕의자, 미끄럼방지양말, 안전손잡이 등의 원가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공단을 기망하여 복지용구 고시가격을 높게 산정 받은 다음, 이를 복지용구 사업소에 판매하고, 공단으로 하여금 복지용구 사업소에 장기요양급여 295억 원(환수 대상금액 62억 원)을 지급하게 하여 편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A○○ 구속, 나머지 불구속 기소
2	E○○(55세) '나'업체 대표	'10. 02. ~ '17. 05. 같은 방법으로 욕창예방방석, 미끄럼방지매트, 목욕의자 등의 원가를 부풀려 장기요양급여 230억 원(환수 대상금액 93억원)을 지급하게 하여 편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구속기소
3	F○○(54세) '다'업체 대표	'08. 10. ~ '17. 05. 같은 방법으로 욕창예방방석, 자세변환용구의 원가를 부풀려 장기요양급여 191억 원(환수 대상금액 92억원)을 지급하게 하여 편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구속기소
4	G○○(58세) '라'업체 실운영자	'11. 12. ~ '17. 05. 같은 방법으로 욕창예방방석의 원가를 부풀려 장기요양급여 132억 원(환수 대상금액 59억원)을 지급하게 하여 편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구속기소
5	H○○(49세) '마'업체 대표	'08. 08. ~ '17. 05. 같은 방법으로 미끄럼방지매트의 원가를 부풀려 장기요양급여 68억 원(환수 대상금액 16억원)을 지급하게 하여 편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구속기소
6	I○○(55세) '바'업체 '사'업체 실운영자	'13. 08. ~ '17. 05. 같은 방법으로 안전손잡이, 미끄럼방지양말의 원가를 부풀려 장기요양급여 63억 원(환수 대상금액 22억원)을 지급하게 하여 편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구속기소
7	J○○(55세) '아'업체 실운영자	'11. 05. ~ '17. 05. 같은 방법으로 미끄럼방지양말의 원가를 부풀려 장기요양급여 31억 원(환수 대상금액 14억원)을 지급하게 하여 편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구속기소
8	K○○(57세) '자'업체 실운영자	'08. 08. ~ '17. 05. 같은 방법으로 욕창예방방석, 욕창예방매트리스의 원가를 부풀려 장기요양급여 167억 원(환수 대상금액 33억원)을 지급하게 하여 편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불구속 기소

순번	피고인	공소사실 요지(죄명)	처분 내역
9	L○○(62세) '차'업체 실운영자	'11. 12. ~ '15. 12. 같은 방법으로 욕창예방방석의 원가를 부풀려 요양기요양급여 93억 원을 지급하게 하여 편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순번 4번 피고인의 친형으로 서로 공범관계임	불구속 기소
10	M○○(63세) '카'업체 대표	'10. 09. ~ '17. 05. 같은 방법으로 욕창예방방석, 자세변환용구의 원가를 부풀려 장기요양급여 67억 원(환수 대상금액 10억원)을 지급하게 하여 편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불구속 기소
11	N○○(43세) '타'업체 대표	'14. 09. ~ '17. 05. 같은 방법으로 목욕의자의 원가를 부풀려 장기요양급여 43억 원(환수 대상금액 9억원)을 지급하게 하여 편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불구속 기소
12	P○○(48세) '파'업체 (구 '하'업체) 대표	'10. 03. ~ '17. 05. 같은 방법으로 성인용보행기, 지팡이의 원가를 부풀려 장기요양급여 26억 원(환수 대상금액 4억원)을 지급하게 하여 편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불구속 기소
13	1. Q○○(61세) '기'업체 대표 2. '거'업체	'15. 08. ~ '17. 05. 같은 방법으로 성인용보행기의 원가를 부풀려 장기요양급여 16억 원(환수 대상금액 6억원)을 지급하게 하여 편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판매법위반]	불구속 기소
14	R○○(53세) '너'업체 대표이사	'14. 09. ~ '17. 05. 같은 방법으로 미끄럼방지매트의 원가를 부풀려 장기요양급여 15억 원(환수 대상금액 4억원)을 지급하게 하여 편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불구속 기소
15	S○○(63세) '더'업체 운영자	'08. 08. ~ '17. 03. 같은 방법으로 욕창예방방석, 욕창예방매트리스의 원가를 부풀려 장기요양급여 13억 원(환수 대상금액 3억원)을 지급하게 하여 편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불구속 기소
16	T○○(61세) '리'업체 대표	'12. 08. ~ '17. 05. 같은 방법으로 전동침대의 원가를 부풀려 장기요양급여 12억 원(환수 대상금액 2천만원)을 지급하게 하여 편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불구속 기소
17	U○○(66세) '머'업체 대표	'15. 08. ~ '17. 05. 같은 방법으로 욕창예방방석의 원가를 부풀려 장기요양급여 2억 8천만 원(환수 대상금액 1억원)을 지급하게 하여 편취 [사기]	불구속 기소

2. 복지용구 판매사업소 [기소일 : 2017. 8. 4. ~ 11. 1.]

순 번	피고인	공소사실 요지(죄명)	처분 내역
1	V○○(40세) ‘버’업체 운영자	‘14. 04 ~ ‘17. 04. 영리를 목적으로 수급자가 부담하는 복지용구의 본인 일부부담금 2,200만 원을 면제하거나 감경 ‘14. 02 ~ ‘17. 04. 영리를 목적으로 수급자를 장기요양기관에 소개하 도록 조장하여 9억 9,800만 원을 소개비 명목으로 교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위반]	불구속 기소
2	1. W○○(53세) ‘서’업체 실운영자 2. ‘서’업체	‘17. 03 ~ ‘17. 03. 영리를 목적으로 수급자가 부담하는 복지용구의 본인일부부담금 7억 원을 면제하거나 감경 ‘14. 03. ~ ‘17. 03. 영리를 목적으로 수급자를 장기요양기관에 소개하 도록 조장하여 4억 5,000원만 원을 소개비 명목으로 교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위반]	불기속 기소
3	X○○(33세) ‘어’업체 운영자	‘14. 08 ~ ‘17. 03. 영리를 목적으로 수급자가 부담하는 복지용구의 본인일부부담금 1,400만 원을 면제하거나 감경 ‘14. 02 ~ ‘17. 04. 영리를 목적으로 수급자를 장기요양기관에 소개하 도록 조장하여 3억 200만 원을 소개비 명목으로 교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위반]	불구속 기소
4	1. Y○○(61세) ‘저’업체 대표 2. ‘저’업체	‘14. 10 ~ ‘17. 06. 영리를 목적으로 수급자가 부담하는 복지용구의 본인일부부담금 9,000만 원을 면제하거나 감경 [노인장기요양보험법위반]	불구속 기소
5	Z○○(56세) ‘차’업체 운영자	‘14. 02 ~ ‘17. 04. 영리를 목적으로 수급자가 부담하는 복지용구의 본인일부부담금 3억 9,000만 원을 면제하거나 감경 [노인장기요양보험법위반]	구약식
6	a○○(49세) ‘커’업체 운영자	‘14. 02 ~ ‘17. 04. 영리를 목적으로 수급자가 부담하는 복지용구의 본인일부부담금 3억 8,000만 원을 면제하거나 감경 [노인장기요양보험법위반]	구약식
7	1. b○○(51세) ‘터’업체 대표 2. ‘터’업체	‘14. 02 ~ ‘17. 03. 영리를 목적으로 수급자가 부담하는 복지용구의 본인일부부담금 2억 9,000만 원을 면제하거나 감경 [노인장기요양보험법위반]	구약식
8	c○○(43세) ‘퍼’업체 운영자	‘14. 02 ~ ‘17. 04. 영리를 목적으로 수급자가 부담하는 복지용구의 본인일부부담금 250만 원을 면제하거나 감경 [노인장기요양보험법위반]	구약식